

「안심1·2·4동 일원 오수관로 정비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7.



대구광역시 동구
〔건설과〕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I 일반사항

1. 본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및 별표 3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2025. 7. 9.)]에 근거하며, 「대구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대구광역시 공고 제2025-502호(2025. 3. 31.)]을 준용한다.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이 상이하거나 불명확한 사항은 우리 구 사업수행능력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 빈도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PQ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하며, 잔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4. 우리 구는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 안내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6. 우리 구에서는 참여기술인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본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취소(해지) 또는 기술인 교체를 요구한다.
 - 가. 참여기술인을 2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 나. PQ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다.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참여업체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우리 구에서는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 다. 시공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3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5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 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본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본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9.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10. 평가대상 기술인 중에서 부패행위 관련자는 감점을 한다.
11.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4)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 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첨부 1)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 1) 참여기술인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기술지원기술인(상하수도, 토질·지질, 토목시공) 3인
총 5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 2)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 3)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참여기술인 자격평가

-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

- 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
- 토목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
 - 토목분야 초급기술인 이상
- 3) 기술지원기술인
 -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
 - 상하수도, 토질·지질, 토목시공 분야
- ※ 상기의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다. 해당분야 경력평가

- 1) 해당분야 경력은 국내·외의 정부, 지방자치단체(BTL 포함)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주된 공종과 같거나 유사한 단일하수관로 분야 건설공사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업무 실적으로 평가한다.
 - ※ 단일하수관로분야 건설공사란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의 설치·개량·정비를 주된 공종으로 시행한 공사를 말하며, 하수처리장 설치공사나 도로 공사 등 다른 공사의 부대공종으로 포함된 하수관로 공사는 제외한다.
- 2) 해당분야 이외의 건설공사업무 실적은 해당분야의 60%를 적용한다.
 - ※ 건설공사업무 인정범위는 ‘건설기술인의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 3] 제3호가목을 참조하여 결정
- 3) 기술지원기술인의 경력평가는 개별 전문분야가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 ※ 해당 공사의 전문성 및 공사 수행 난이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 대상자의 배치를 권장함.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단일하수관로분야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 24개월 이상인 자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단일하수관로분야의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 12개월 이상인 자

라. 직무분야 실적평가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4조 별표 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직무분야 : 토목

※ 이 기준에서 “하수도분야 건설공사”란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의 설치·개량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하며, 우수처리시설, 비점오염 저감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은 제외한다.

※ 해당 공사의 전문성 및 공사 수행 난이도를 고려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하수도분야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경력 12년 이상인 자의 배치를 권장함.

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 2) 「주택법」 제24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 3)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 5) 「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바.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평가를 위한 자격종목 등 기술자격자 인정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교육훈련 평가는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책임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분야별기술인 : 2주이상(1.0점), 1주이상 2주미만(0.5점)
- 2) 기술자격 평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책임기술인의 경우: 토목분야의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해당분야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사.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 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아. 경력증명서상 공사종류, 발주청, 사업명, 참여분야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되어 있는 경력은 불인정한다.

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수행경력은 사업 시행자 지정공문 사본,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참여 여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확인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한 경우에 해당분야 및 직무분야 경력으로 인정한다.

4.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국내·외 정부, 지방자치단체(BTL 포함), 정부 및 지방투자기관에서 수행한 **단일하수관로 분야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용역)실적을 평가한다.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09. 3. 1,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수행중인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2. 3. 2, 준공예정일 2014.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기간은 2012. 3. 2부터 2014. 5. 1 까지 금액계상[2012. 3. 2부터 2014. 5. 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토목)에 대한 용역실적은 해당 용역의 60%를 적용한다.

나.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5. 해당 용역은 유사용역 수행실적 항목 중 “용역수행성과” 평가를 실시한다.

6.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첨부 2)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 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활용실적

-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 2) 활용실적은 본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
-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4)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 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 1)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 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 및 「국가통합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8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연구 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 4)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분석·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8.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9.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pm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10.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절감실적을 인정받아 다음 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첨부 3)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발주청,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등)
-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 다. 공사비 절감현황(절감기여율, 절감금액)
- 라. 발주청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날인)

Ⅲ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 가 항 목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배점(100)	비고
참여기술인 [60점]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	등 급	부적격 시 실격	절대평가
		해당분야경력	11	
		직무분야실적	9	
		교육훈련 및 자격	1	
		면접(서면 평가)	4	상대평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	자 격	부적격 시 실격	절대평가
		해당분야경력	13	
		직무분야실적	9	
		교육훈련	1	
		면접(서면 평가)	2	상대평가
	기술지원기술인 (10)	등 급	3	절대평가
		해당분야경력	6	
		교육훈련 및 자격	1	
	소 계		6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1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단일하수관로분야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간)	8	절대평가
	용역수행성과평가	대구광역시에서 수행한 하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평가결과(최근 5년간)	2	절대평가
	소 계		10점	
신용도 [15점]	영업(업무)정지	지정기간	7	절대평가
	벌 점	부과점수	5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소 계		15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개발·활용실적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3	절대평가
	투자실적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최근 3년간)	7	
	소 계		10점	
교체빈도 [5점]	용역사업자	교체빈도율(최근1년간)	3	절대평가
	참여기술인	교체1회당 0.1~0.25점 감점(최근1년간)	2	
	소 계		5점	
가점 및 감점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0.2	절대평가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0.3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5	

IV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기술 인	(1)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60 [25] (21)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처리함																																															
	(가) 해당분야 경력	(11)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table><tr><th>해당공사 규모</th><th colspan="5">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발주청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인이 현장에 배치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이하 같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경력 (단위 :년)</th></tr><tr><td>1,000억원이상</td><td>15이상</td><td>15미만 13이상</td><td>13미만 11이상</td><td>11미만 9이상</td><td>9미만</td></tr><tr><td>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td><td>13이상</td><td>13미만 11이상</td><td>11미만 9이상</td><td>9미만 7이상</td><td>7미만</td></tr><tr><td>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td><td>11이상</td><td>11미만 9이상</td><td>9미만 7이상</td><td>7미만 5이상</td><td>5미만</td></tr><tr><td>300억원미만</td><td>9이상</td><td>9미만 7이상</td><td>7미만 5이상</td><td>5미만 3이상</td><td>3미만</td></tr><tr><td>점수</td><td>11</td><td>10</td><td>9</td><td>8</td><td>7</td></tr></table>	해당공사 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발주청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인이 현장에 배치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이하 같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경력 (단위 :년)					1,000억원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11	10	9	8	7											
	해당공사 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발주청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인이 현장에 배치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이하 같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경력 (단위 :년)																																																
	1,000억원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11	10	9	8	7																																													
(나) 직무분야 실적	9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1) 설계, 시공, 시험,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6점) <table><tr><th>등 급</th><th colspan="5">경력기간 (단위 : 년)</th></tr><tr><td>특 급</td><td>15이상</td><td>15미만 13이상</td><td>13미만 11이상</td><td>11미만 9이상</td><td>9미만</td></tr><tr><td>고 급</td><td>12이상</td><td>12미만 10이상</td><td>10미만 8이상</td><td>8미만 6이상</td><td>6미만</td></tr><tr><td>점수</td><td>6</td><td>5.4</td><td>4.8</td><td>4.2</td><td>3.6</td></tr></table> 2) 시공, 시험,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3점) <table><tr><th>등 급</th><th colspan="5">경력기간 (단위 : 년)</th></tr><tr><td>특 급</td><td>7이상</td><td>7미만 5이상</td><td>5미만 3이상</td><td>3미만 2이상</td><td>2미만</td></tr><tr><td>고 급</td><td>5이상</td><td>5미만 4이상</td><td>4미만 3이상</td><td>3미만 2이상</td><td>2미만</td></tr><tr><td>점 수</td><td>3</td><td>2.7</td><td>2.4</td><td>2.1</td><td>1.8</td></tr></table>	등 급	경력기간 (단위 : 년)					특 급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고 급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점수	6	5.4	4.8	4.2	3.6	등 급	경력기간 (단위 : 년)					특 급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고 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3	2.7	2.4	2.1	1.8
등 급	경력기간 (단위 : 년)																																																	
특 급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고 급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점수	6	5.4	4.8	4.2	3.6																																													
등 급	경력기간 (단위 : 년)																																																	
특 급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고 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3	2.7	2.4	2.1	1.8																																													
(다) 교육훈련	1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 (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기술인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 (23)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table><tr><td>해당공사규모</td><td colspan="5">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경력 (단위: 월)</td></tr><tr><td>300억원이상</td><td>48이상</td><td>48미만 42이상</td><td>42미만 36이상</td><td>36미만 30이상</td><td>30미만</td></tr><tr><td>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td><td>36이상</td><td>36미만 28이상</td><td>28미만 20이상</td><td>20미만 12이상</td><td>12미만</td></tr><tr><td>100억원미만</td><td>24이상</td><td>24미만 18이상</td><td>18미만 12이상</td><td>12미만 6이상</td><td>6미만</td></tr><tr><td>점 수</td><td>13</td><td>12</td><td>11</td><td>10</td><td>9</td></tr></table>	해당공사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경력 (단위: 월)					300억원이상	48이상	48미만 42이상	42미만 36이상	36미만 30이상	30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36이상	36미만 28이상	28미만 20이상	20미만 12이상	12미만	100억원미만	24이상	24미만 18이상	18미만 12이상	12미만 6이상	6미만	점 수	13	12	11	10	9																																																								
	해당공사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경력 (단위: 월)																																																																																							
300억원이상	48이상	48미만 42이상	42미만 36이상	36미만 30이상	30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36이상	36미만 28이상	28미만 20이상	20미만 12이상	12미만																																																																																				
100억원미만	24이상	24미만 18이상	18미만 12이상	12미만 6이상	6미만																																																																																				
점 수	13	12	11	10	9																																																																																				
	(가) 해당분야 경력	(13)																																																																																							
	(나) 직무분야 실적	9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1) 설계, 시공, 시험,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6점) <table><tr><td>등 급</td><td colspan="5">경력기간 (단위: 년)</td></tr><tr><td>특 급</td><td>15이상</td><td>15미만 13이상</td><td>13미만 11이상</td><td>11미만 9이상</td><td>9미만</td></tr><tr><td>고 급</td><td>12이상</td><td>12미만 10이상</td><td>10미만 8이상</td><td>8미만 6이상</td><td>6미만</td></tr><tr><td>중 급</td><td>10이상</td><td>10미만 8이상</td><td>8미만 6이상</td><td>6미만 4이상</td><td>4미만</td></tr><tr><td>초 급</td><td>8이상</td><td>8미만 6이상</td><td>6미만 4이상</td><td>4미만 2이상</td><td>2미만</td></tr><tr><td>점 수</td><td>6.0</td><td>5.4</td><td>4.8</td><td>4.2</td><td>3.6</td></tr></table> 2) 시공, 시험,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3점) <table><tr><td>등 급</td><td colspan="5">경력기간 (단위: 년)</td></tr><tr><td rowspan="2">특 급</td><td>7이상</td><td>7미만 5이상</td><td>5미만 3이상</td><td>3미만 2이상</td><td>2미만</td></tr><tr><td>3.0</td><td>2.7</td><td>2.4</td><td>2.1</td><td>1.8</td></tr><tr><td rowspan="2">고 급</td><td>5이상</td><td>5미만 4이상</td><td>4미만 3이상</td><td>3미만 2이상</td><td>2미만</td></tr><tr><td>3.0</td><td>2.7</td><td>2.4</td><td>2.1</td><td>1.8</td></tr><tr><td rowspan="2">중 급</td><td>4이상</td><td>4미만 3이상</td><td>3미만 2이상</td><td colspan="2">2미만</td></tr><tr><td>3.0</td><td>2.7</td><td>2.4</td><td colspan="2">2.1</td></tr><tr><td rowspan="2">초 급</td><td colspan="3">3이상</td><td colspan="2">3미만</td></tr><tr><td colspan="3">3.0</td><td colspan="2">2.7</td></tr></table>	등 급	경력기간 (단위: 년)					특 급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고 급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중 급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초 급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6.0	5.4	4.8	4.2	3.6	등 급	경력기간 (단위: 년)					특 급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3.0	2.7	2.4	2.1	1.8	고 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3.0	2.7	2.4	2.1	1.8	중 급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3.0	2.7	2.4	2.1		초 급	3이상			3미만		3.0			2.7	
	등 급	경력기간 (단위: 년)																																																																																							
특 급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고 급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중 급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초 급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6.0	5.4	4.8	4.2	3.6																																																																																				
등 급	경력기간 (단위: 년)																																																																																								
특 급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3.0	2.7	2.4	2.1	1.8																																																																																				
고 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3.0	2.7	2.4	2.1	1.8																																																																																				
중 급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3.0	2.7	2.4	2.1																																																																																					
초 급	3이상			3미만																																																																																					
	3.0			2.7																																																																																					
	(다) 교육훈련	1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0.5점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설계단계에 참여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훈련 평가방법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3)기술지원 기술인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기술지원기술인 평가 배점을 참여기술인의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가) 등급	3	○ 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평가																																								
			<table><tr><td>해당공사규모</td><td colspan="5">등 급 (점수)</td></tr><tr><td>총공사비</td><td colspan="2">특급</td><td colspan="3">고급 이하</td></tr><tr><td>300억원이상</td><td colspan="2">3</td><td colspan="3">2</td></tr><tr><td>총공사비</td><td colspan="2">고급 이상</td><td colspan="3">중급</td></tr><tr><td>300억원미만</td><td colspan="2">3</td><td colspan="3">2</td></tr></table>					해당공사규모	등 급 (점수)					총공사비	특급		고급 이하			300억원이상	3		2			총공사비	고급 이상		중급			300억원미만	3		2								
	해당공사규모	등 급 (점수)																																									
	총공사비	특급		고급 이하																																							
300억원이상	3		2																																								
총공사비	고급 이상		중급																																								
300억원미만	3		2																																								
	(나) 해당분야 경력	6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table><tr><td>해당 공사규모</td><td colspan="5">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경력 (단위 : 년)</td></tr><tr><td>1,000억원이상</td><td>15이상</td><td>15미만 13이상</td><td>13미만 11이상</td><td>11미만 9이상</td><td>9미만</td></tr><tr><td>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td><td>13이상</td><td>13미만 11이상</td><td>11미만 9이상</td><td>9미만 7이상</td><td>7미만</td></tr><tr><td>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td><td>11이상</td><td>11미만 9이상</td><td>9미만 7이상</td><td>7미만 5이상</td><td>5미만</td></tr><tr><td>300억원미만</td><td>9이상</td><td>9미만 7이상</td><td>7미만 5이상</td><td>5미만 3이상</td><td>3미만</td></tr><tr><td>점수</td><td>6</td><td>5.4</td><td>4.8</td><td>4.2</td><td>3.6</td></tr></table>					해당 공사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경력 (단위 : 년)					1,000억원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6	5.4	4.8	4.2	3.6
해당 공사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경력 (단위 : 년)																																										
1,000억원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6	5.4	4.8	4.2	3.6																																						
	(다) 교육훈련	1	○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 (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1인에 한하여 적용																																								
	(4) 면접 (서면 평가)	(6)	○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로 하며, 사업단계에 따라 해당 분야의 참여기술인이 다를 경우 단계별 각 1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첨부1)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table><tr><td rowspan="2">구 분</td><td colspan="3">용 역 비</td></tr><tr><td>20억원 미만</td><td>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td><td>30억원 이상</td></tr><tr><td>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td><td>2점</td><td>3점</td><td>4점</td></tr><tr><td>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td><td>1점</td><td>1.5점</td><td>2점</td></tr></table>					구 분	용 역 비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점	3점	4점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1점	1.5점	2점																					
구 분	용 역 비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점	3점	4점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1점	1.5점	2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1)유사용역수행실적	10 [8]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table><tr><th>해당공사규모</th><th colspan="5">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단위 : 억원)</th></tr><tr><td>3,000억원이상</td><td>80이상</td><td>80미만 70이상</td><td>70미만 60이상</td><td>60미만 50이상</td><td>50미만</td></tr><tr><td>3,000억원미만 2,000억원이상</td><td>60이상</td><td>60미만 55이상</td><td>55미만 50이상</td><td>50미만 45이상</td><td>45미만</td></tr><tr><td>2,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td><td>50이상</td><td>50미만 45이상</td><td>45미만 40이상</td><td>40미만 35이상</td><td>35미만</td></tr><tr><td>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td><td>40이상</td><td>40미만 35이상</td><td>35미만 30이상</td><td>30미만 25이상</td><td>25미만</td></tr><tr><td>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td><td>30이상</td><td>30미만 25이상</td><td>25미만 20이상</td><td>20미만 15이상</td><td>15미만</td></tr><tr><td>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td><td>20이상</td><td>20미만 15이상</td><td>15미만 10이상</td><td>10미만 5이상</td><td>5미만</td></tr><tr><td>100억원미만</td><td>10이상</td><td>10미만 8이상</td><td>8미만 6이상</td><td>6미만 4이상</td><td>4미만</td></tr><tr><td>점수</td><td>8</td><td>7.2</td><td>6.4</td><td>5.6</td><td>4.8</td></tr></table> ※ 유사용역 : 단일 하수관로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100%인정 기타 토목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60% 인정	해당공사규모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단위 : 억원)					3,000억원이상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00억원미만 2,000억원이상	60이상	60미만 55이상	55미만 50이상	50미만 45이상	45미만	2,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	50이상	50미만 45이상	45미만 40이상	40미만 35이상	35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40이상	40미만 35이상	35미만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100억원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점수	8	7.2	6.4	5.6	4.8
	해당공사규모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단위 : 억원)																																																							
3,000억원이상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00억원미만 2,000억원이상	60이상	60미만 55이상	55미만 50이상	50미만 45이상	45미만																																																				
2,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	50이상	50미만 45이상	45미만 40이상	40미만 35이상	35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40이상	40미만 35이상	35미만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100억원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점수	8	7.2	6.4	5.6	4.8																																																				
	(2)용역수행성과	[2]	○ 용역수행평가일 기준 최근 5년간 업체가 “대구광역시”에서 수행한 하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기술용역평가”결과로 절대평가한다. ※“대구광역시” 범위: 시, 구·군, 사업소, 공단 <table><tr><th>용역평가결과</th><th>95점 이상</th><th>95점 미만 92점 이상</th><th>92점 미만 89점 이상</th><th>89점 미만 86점 이상</th><th>86점 미만</th></tr><tr><td>점수</td><td>2점</td><td>1.8점</td><td>1.6점</td><td>1.4점</td><td>1.2점</td></tr></table> ○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한 하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용역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1.6점을 부여한다.	용역평가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용역평가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다. 신 용 도	(1) 영업(업무) 정지	15 [7]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벌점	[5]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3) 재정상태 건설도	[3]	○ 재정상태 건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table><tr><td>회사채</td><td><u>BBB-이상</u></td><td><u>BBB-미만</u> <u>B-이상</u></td><td><u>CCC+</u> <u>이하</u></td><td>미제출</td></tr><tr><td>기업어음</td><td><u>A3-이상</u></td><td><u>A3-미만</u> <u>B-이상</u></td><td><u>C</u>이하</td><td>미제출</td></tr><tr><td>기업신용</td><td><u>BBB-이상</u></td><td><u>BBB-미만</u> <u>B-이상</u></td><td><u>CCC+</u>이하</td><td>미제출</td></tr><tr><td>점수</td><td><u>30</u></td><td><u>28</u></td><td><u>21</u></td><td><u>0</u></td></tr></table>	회사채	<u>BBB-이상</u>	<u>BBB-미만</u> <u>B-이상</u>	<u>CCC+</u> <u>이하</u>	미제출	기업어음	<u>A3-이상</u>	<u>A3-미만</u> <u>B-이상</u>	<u>C</u>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u>BBB-이상</u>	<u>BBB-미만</u> <u>B-이상</u>	<u>CCC+</u> 이하	미제출	점수	<u>30</u>	<u>28</u>	<u>21</u>
회사채	<u>BBB-이상</u>	<u>BBB-미만</u> <u>B-이상</u>	<u>CCC+</u> <u>이하</u>	미제출																		
기업어음	<u>A3-이상</u>	<u>A3-미만</u> <u>B-이상</u>	<u>C</u>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u>BBB-이상</u>	<u>BBB-미만</u> <u>B-이상</u>	<u>CCC+</u> 이하	미제출																		
점수	<u>30</u>	<u>28</u>	<u>21</u>	<u>0</u>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1)개발·활용실적	10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기준점수 <table><tr><th colspan="2">구 분</th><th>기준점수</th></tr><tr><td>개발실적</td><td>건설신기술</td><td>2.0점/건당</td></tr><tr><td rowspan="2">활용실적</td><td>건설신기술</td><td>0.5점/건당</td></tr><tr><td>건설기술에 관한 특허</td><td>0.3점/건당</td></tr></table>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6">가 중 치</th></tr><tr><th>1.0</th><th>0.9</th><th>0.8</th><th>0.7</th><th>0.6</th><th>0.5</th></tr><tr><td>실적건수(건)</td><td>5이상</td><td>5미만 4이상</td><td>4미만 3이상</td><td>3미만 2이상</td><td>2미만 1이상</td><td>1미만 0.3이상</td></tr><tr><td>실적금액(억원)</td><td>20이상</td><td>20미만 18이상</td><td>18미만 16이상</td><td>16미만 14이상</td><td>14미만 12이상</td><td>12미만 10이상</td></tr></table>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2.0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0.5	실적건수(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0.3이상	실적금액(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12미만 10이상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2.0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0.5																																			
실적건수(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0.3이상																																			
실적금액(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12미만 10이상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table><tr><td>구 분</td><td>5년미만</td><td>5년이상10년미만</td><td>10년이상20년미만</td></tr><tr><td>인정률</td><td>100%</td><td>80%</td><td>60%</td></tr></table>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20년미만	인정률	100%	80%	60%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20년미만														
인정률	100%	80%	60%														
	(2) 투자실적	[7]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 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table><tr><td>구분</td><td>1.5%이상</td><td>1.50%미만 1.25%이상</td><td>1.25%미만 1.00%이상</td><td>1.00%미만 0.75%이상</td><td>0.75%미만 0.50%이상</td><td>0.5%미만</td></tr><tr><td>점수</td><td>7</td><td>6.8</td><td>6.6</td><td>6.4</td><td>6.2</td><td>6.0</td></tr></table>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구분	1.5%이상	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0.5%미만	점수	7	6.8	6.6	6.4	6.2	6.0
구분	1.5%이상	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0.5%미만											
점수	7	6.8	6.6	6.4	6.2	6.0											
마. 교체빈도	(1)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5 [3]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table><tr><td>교체빈도율 (%)</td><td>5% 미만</td><td>5% 이상 10%미만</td><td>10%이상 15%미만</td><td>15%이상 20%미만</td><td>20% 이상</td></tr><tr><td>점 수</td><td>3</td><td>2.5</td><td>2</td><td>1</td><td>0</td></tr></table>	교체빈도율 (%)	5% 미만	5% 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 이상	점 수	3	2.5	2	1	0		
	교체빈도율 (%)	5% 미만	5% 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 이상											
점 수	3	2.5	2	1	0												
(2) 참여기술인	[2]	○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table><tr><td>가중치</td><td>1.0</td><td>0.8</td><td>0.5</td></tr><tr><td>절감금액</td><td>10억원 이상</td><td>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td><td>5억원 미만 1억원 이상</td></tr><tr><td>절감비율</td><td>1.0% 이상</td><td>1.0% 미만 0.5% 이상</td><td>0.5% 미만 0.1% 이상</td></tr></table>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가중치	1.0	0.8	0.5	절감금액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절감비율	1.0% 이상	1.0% 미만 0.5% 이상	0.5% 미만 0.1% 이상
	가중치	1.0	0.8	0.5										
절감금액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절감비율	1.0% 이상	1.0% 미만 0.5% 이상	0.5% 미만 0.1% 이상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발주청(지방항공청,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등)은 부패행위 관련자를 통합관리하여 본 감점조항 공통적용

<첨부 1>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상대평가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 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첨부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 ,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 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 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 ,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 ,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 에 준하는 등급)

<첨부 3>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I.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1)용역명						3)발주기관 (발주청)			
2)공사현장 위치									
4)공사개요	4-1)공사규모								
	4-2)총공사비								
5)건설사업 관리용역 사업자 (대표사)	5-1)회 사 명					5-3)대표자			
	5-2)등록번호					5-4)전화번호			
6)용역기간	20 . . . ~ 20 . . .								
7)과업범위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II.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		※ 공사비 절감기술자에 해당되는 기술자의 경우 대상여부란에 ○표하고, 대상 기술자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성 명	직무분야	생년월일	배치기간	대상 여부	절감 기여율 (%)	절감금액 (백만원)	비고	
합 계	인					100			
1)책임									
2)분야별									
3)기술지원									
III. 공사비절감 인정일		년 월 일							
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 주 기 관 장					직인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분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분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